

요약

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에 따라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이 규정변경예고되었음. 해당 개정안에서는 전자적 형태로 전송가능한 서류의 범위, 요양기관의 청구서류 전송 의무 예외사유, 요양기관의 청구서류 전송 시 암호화 등 보호조치의 내용, 전송대행기관의 준수사항 및 업무범위 등에 관하여 규정함

○ 금융위원회는 최근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규정변경예고하였음

-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(2023. 10. 24. 공포)에 따라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규정변경예고하였음(2024. 7. 10.)
 - 참고로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2024. 3. 5.에 입법예고된 바 있음
 - 아래에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봄

○ 개정안에서는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는 청구서류의 범위를 규정함

- 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등¹⁾은 보험금 청구를 위하여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진료비 계산서·영수증,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음(보험업법 제102조의6 제1항)
-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“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함: ①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7조 제1항에 따른 계산서·영수증 및 이에 준하는 서류, ②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7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세부산정내역, ③ 「의료법 시행규칙」 제12조에 따른 처방전
 - 참고로 ①의 계산서·영수증에 대해서는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별지 제6호 내지 제12호, ②의 세부산정내역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고시인 「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」의 별지 제1호, ③의 처방전에 대해서는 「의료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9호에서 서식을 제공하고 있음

1) 보험계약자, 피보험자, 보험금을 취득할 자 또는 그 대리인임

○ 개정안에서는 요양기관의 청구서류 전송 의무에 대한 예외사유를 구체화함

- 요양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보험계약자 등의 요청에 따르도록 의무화하고 있음(보험업법 제102조의6 제2항)
 - 해당 예외사유에 대해서 2024. 3. 5.에 입법예고되었던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음:
 - ① 보험업법 제102조의7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물리적 결함이나 손상으로 전산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, ②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22호에 따른 전자적 침해행위로 인해 전산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, ③ 전산시스템을 구축 중이거나 보완 중에 있어 전자적 전송이 불가능한 경우, ④ 그 밖에 위 ①~③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당한 사유
- 이번에 규정변경예고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에서는 위 ③, ④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
 - ③은 보험회사 또는 전송대행기관과 전산시스템 연결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후 전산시스템을 구축 중이거나 보완 중에 있는 경우를 말함
 - ④는 다음과 같은 사유를 말함: (a) 「의료법」에 따른 의료기관이 동법 제64조에 따른 의료업 정지 처분으로 인해 전산시스템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, (b) 「약사법」에 따른 약국이 동법 제76조 및 제76조의2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으로 인해 전산시스템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, (c) 「의료법」에 따른 의료기관이 동법 제23조의2 제1항에 따른 전자 의무기록시스템²⁾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, (d) 「약사법」에 따른 약국이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³⁾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, (e) 「의료법」에 따른 의료기관이 동법 제40조에 따라 폐업·휴업을 신고한 경우, (f) 「약사법」에 따른 약국이 제22조에 따른 폐업·휴업을 신고한 경우

○ 개정안에서는 요양기관의 청구서류 전송 시 암호화 등 보호조치의 내용을 규정함

- 2024. 3. 5.에 입법예고되었던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의하면 요양기관이 보험회사에 서류를 전송하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: ①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가 가능한 형태일 것, ② 안전성 확보 및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암호화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
- 이번에 규정변경예고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은 위 ②의 세부 내용을 정하고 있음
 - 해당 보호조치 요건은 다음과 같음: (a) 전송 대상이 되는 정보의 암호화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등 안전성 확보 조치가 시행되었을 것, (b)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보호하는 조치가 시행되었을 것, (c) 요양기관 및 보험회사가 상호 식별·인증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일 것

2) 의료법 제23조의2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 의무기록이 효율적이고 통일적으로 관리·활용될 수 있도록 기록의 작성, 관리 및 보존에 필요한 전산정보처리시스템(「전자 의무기록시스템」), 시설, 장비 및 기록 서식 등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전자 의무기록시스템을 제조·공급하는 자,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그 준수를 권고할 수 있으며,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고시로 「전자 의무기록의 관리·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」을 정하고 있음

3) 참고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와 관련된 소프트웨어의 개발·공급·검사 등 전산 관리 업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관장함(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제1항 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)

○ 개정안은 전송대행기관의 준수사항, 전산시스템 운영, 업무범위 등에 관한 내용도 규정함

- 전송대행기관⁴⁾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및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, 보험금 청구서류의 전자적 전송을 요청하는 자의 본인확인을 해야 함
 - 본인확인은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등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방법, 「전자서명법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같은 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인증서를 통한 방법, 「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」 제2조 제10호의 생체인식정보를 통한 방법에 의할 수 있음
- 전송대행기관의 전산시스템은 다음의 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음
 - 「의료법」 제23조의2 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시스템, 「지역보건법」 제5조 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, 「약사법」에 따라 등록된 약국이 사용하는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,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5조 제6항에 따른 신용정보공동전산망(실손의료보험 보험계약 관련 정보에 한함), 그 밖에 서류전송 전산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시스템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정보시스템임
- 전송대행기관은 실손의료보험계약의 서류 전송을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·운영 업무를 주관하여 관리함
 - 전송대행기관은 해당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조직 및 인력을 구성·운영할 수 있으며 서류전송 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지침을 정할 수 있음

4) 2024. 3. 5.에 입법예고되었던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의하면 보험개발원을 말함